제150호

행 정 명 령

DEPARTMENT OF CORRECTIONS & COMMUNITY SUPERVISION에 부속된 하나 이상의 청소년 전용 교화 시설 설립

뉴욕주는 법령에 의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동으로 성인 형사 사법 시스템의 모든 16세 ~ 17세 청소년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2개 주 중 하나이며, 및

현재 약 100명의 청소년들이 뉴욕주 성인 교도소 시설에 감금되었고 약 550명의 청소년들은 현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은 불합리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82%는 성인 교도소 감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인 교도소에 갇혀 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것은 자살과 재범의 높은 발생률을 포함, 인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으로 분류되어 감금된 청소년은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감금된 청소년보다 다시 감금될 가능성이 2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aise the Age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쏟아 부은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금된 청소년들이 서비스를 받고 유죄 판결의 부수적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 처벌 연령을 높이거나 Commission on Youth, Public Safety & Justic와 본인이 제안한 법안에 명시된 중대한 개혁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심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안전과 정의 실현의 이익을 위해 뉴욕주는 법원에 출석한 청소년들을 위한 개선된 결과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현재 감금된 청소년들을 성인 구치소에서 분리하고, 기존 법에 의거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들을 성인 구치소에서 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재범률을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교화법(Correction Law) 112절에 의거, DOCCS(Commissioner of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는 주정부 산하 교화 시설, 여기에 제약된 수감자, 그리고 정부, 원칙, 치안, 계약, 재정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관리, 유지 및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및

사회교화법(Correction Law) 70절 2항에 의거 DOCCS는 법률의 다른 조항과 일치하는 처리 담당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모든 유형을 수립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및

사회교화법(Correction Law) 70절 3항에 의거 DOCCS 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규 교화 시설을 설립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및

사회교화법(Correction Law) 70절 8항에 의거 DOCCS 위원장은 대학, 사회 단체, 또는 교화 시설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충당된 액수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및

행정명령 501절에 의거, 뉴욕주 OCFS(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는 해당 주의 청소년들의 도덕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복지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에 대한 수립, 관리 및 유지 또는 하청을 줄 수 있는 정식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 16, 17세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특히 치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OCFS의 주요 임무입니다. 및

DOCCS는 OCFS, OMH(Office Mental Health) 및 OGS(Office of General Services)와 공동으로, 16, 17세 청소년들을 성인 교도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 및 직원과 함께 청소년 전용 시설로 이송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당국은 고려 대상자들을 위한 시설과 함께 16~17세 청소년들과 어린 여성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인력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확인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제 그러한 계획을 시행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ANDREW M. CUOMO 본인은 뉴욕주 주지사의 자격과 뉴욕주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본 행정명령을 통해 Raise the Age 법안의 통과와 해당 법안과 관련된 필요한 개혁을 통과시키기 위한 중간 조치로 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DOCCS 위원장은 18세 이상인 성인 수감자와 구금된 여성과 청소년 대 연령의 남자 수감자들을 따로 분류하기 위한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송은 2016년 8월부터 시작되며 시설 개조를 위한 허용 단계에서 실시합니다. 및

2.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함께 해당 시설 관리는 DOCCS에서 담당하고 OCFS에서는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해당 시설은 청소년들을 돌보는 특별 훈련을 이수한 직원을 포함합니다. 및

3. OCFS 위원장은 DOCCS 위원장 및 타 당국과 함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DOCCS 직원의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이 청년 계층에 대한 DOCCS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어려운 사건에 대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OCFS 의료 담당자 및 사건 책임자는 DOCCS에서 그러한 시설이나 기타 시설에서 청소년의 전문적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화 회의, 화상 회의, 현장 방문, 공동 교육 세션 및 사건 상담에 참여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DOCCS 및 OCFS는 이러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합니다. 및

4. OMH 위원장은 사회교화법(Correction Law) 2절 27항에 정의된 대로 해당 시설에 "1단계 시설"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정규직 직원을 지정합니다. 및

5. 사회교화법(Correction Law) 504절에 의거, DOCCS 위원장은 그러한 시설에서 90일을 초과하는 징역 선고를 받은 모든 청소년을 수용하는 지역의 교정 시설에서 온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은 즉각 발효되고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천십오년 십이월 이십칠일 Albany시에서 주지사
본인의 날인과 뉴욕주정부 인감을
이곳에 날인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

Korean